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대 학 및 지 역 균 형 인 재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이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로 직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협업체계 기반 마련(안 제16조 및 제17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업체계 육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지역 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지역협업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안 제18조 및 제19조)

지역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변경과 지정해제 등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2. 법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
3. 그 밖에 고등교육 및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6장(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16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각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지역의 전담기관 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때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스스로 지정의 해지를 원하는 때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전담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⑥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및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2. 지역 내 인재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사업 간 조정 및 협력
3. 법 제22조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수립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4. 그 밖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장이 정한다.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 규제특례 적용기간
2.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고등교육혁신의 내용 및 규제특례와의 연관성
3.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혁신을 위해 참여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등의 제정·개정 계획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 전·후에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6.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 목적 및 기간
2. 특화지역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 및 범위
3.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특화지역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하고 90일을 계산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특화지역계획에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4. 제4항 후단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⑦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화지역계획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 분과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해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계획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용어의 변경
2.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3.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으로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학과명 및 정원의 변경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지역 지정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화지역 지정 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법령 개정 등으로 더 이상 규제특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각 호 따른 지정해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특화지역 지정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⑤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과 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제8조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분과위원회 구성·운영)</u>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u>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의</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u>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u> 2. <u>법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u> 3. <u>그 밖에 고등교육 및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 자</u> ② <u>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u>
<u><신 설></u>	<u>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u>

<신 설>

제16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각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지역의 전담기관 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

정을 해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때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스스로 지정의 해지를 원하는 때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전담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⑥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및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2. 지역 내 인재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사업 간 조정 및 협력

3. 법 제22조에 따른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계획 수립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4. 그 밖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장이 정한다.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 규제특례 적용기간
2.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고등교육혁신의 내용 및 규제특례와의 연관성
3.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혁신을 위해 참여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등의 제정·개정 계획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 전·후에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6.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역
협업위원회의 장은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
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
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고등교
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
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의견제
출 기간 내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교육
부장관이 특화지역을 지정할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 목적 및 기간
2. 특화지역 내 적용되는 규제
특례의 내용 및 범위
3.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
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특화지역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하고 90일을 계산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특화지역계획에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4. 제4항 후단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신 설>

않는 경우

⑦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화지역계획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해제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계획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용어의 변경
2.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3.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등으로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학과명 및 정원의 변경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지역 지정 당시에 예상
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
여 특화지역 지정 해제가 공
익상 필요한 경우

3.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
성한 경우

4. 법령 개정 등으로 더 이상 규
제특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을 유
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
항에 각 호 따른 지정해제 사유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업
위원회의 장이 특화지역 지정해
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
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⑤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과
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해 필요
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923